

場所別 大型火災(被害額 20 萬 파운드 以上)	件 數	被 壞 額 (千파운드)
建築中인 빌딩	5	4,748
事務室	4	4,373
가죽 제품 가공소 및 공장	4	2,260
도기 제조소, 벽돌·유리·시멘트 공장 등	3	1,184
圖書館	2	1,115
教 會	2	520
農 場	2	519
其 他	7	2,247
	222	136,313

(FPA ; Fire Prevention 1982 年 10 月號에서)

4. 特殊建物의 割引料率規程 改正

建築法施行令이 全文 改正됨에 따라 防災研究 建築分科委員會에서는 지난 8월 3일 同 改正令에 대한 安全點檢 運營時의 施行指針을 樹立함과 아울러 現行 保險料率書中 “特定建物의 割引料率”規程에 대한 適用上의 問題點 解決方案과 割引 趣旨에 符合된 適用基準原則을 樹立하여 대한손해보험협회에 改正 建議한 바, '82年 12月 3日 한국보험공사에서 審議, 改正되었기에 業務遂行上 同 改正規程의 效率的인 適用을 위하여 防災研究 建築分科委員會에서 討議되었던 内容 및 改正 建議案과 同 改正規程을 對比·紹介한다.

◊ 討議內容 ◊

1. 규정 적용 지침

가. 현행 방화구획 할인 규정상 명문화되지 않은 아래의 사항은 건축법령의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합당할 것임.

○ 방화벽 구조의 세부 기준

○ 방화문의 자동 폐쇄 장치 부착 여부

나. 또한 건축법령 개정시마다 할인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현행체제(건축법은 건축 당시의 법령 적용을 원칙으로 함)는 협회의 인상 및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할인대상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음.

○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구획대상 면적 및 층

- 1,000 m² 이내, 지하층 및 3층 이상층 등으로 고정.

다. 건축법 및 소방법규 관련 조문의 적용;

기존법규의 각 조문은 그 내용과 관련된 개정법규의 각 조문으로 대체 적용하고, 미제정된 기술기준은 구법규의 기술기준을 참정 적용하여야 할 것임.

2. 규정 개정 전의 내용

가. 각 조문의 용어는 요율서 및 관계법규상의 용어와 가능한한 통일시키고, 각 검사기준의 내

용은 관계법규의 최소기준이 되는 것만을 기술

나. 각 검사기준의 기술적인 세부 기준은 관계법규의 기술기준에 의하도록 명시하여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사전 제거

다. 그간에 등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

① 1,2급 구조의 전물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된 전물로 함.

② 목조 전물 등의 방화구획 기준 → 용도별 구획기준을 포함시킴.

③ 2개의 분실 → 분실의 개념(연면적의 1/2~1/3) 도입

④ 피난설비 할인기준 → 직통 계단이 피난계단 구조 이상인 것으로 제한하고, 기타 필요한 설비의 종류를 명시

3. 규정 개정(안) 대비표

현 행 효 율 서 규 정	개 정 전 의 초 안	改 正
방화구획 (1) 지정건물 가. 1,2급 구조건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 의 정한 바에 따라 방화 구획이 된 것으로서 그 구획의 구조가 방화벽 의 구조 또는 동등 이 상의 구조로서 구획된 건물	방화구획 (1) 연면적 1,000 평 이상의 전물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 연재료로 된 전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내화구조의 바 닥, 벽 및 갑종 방화문 또는 자동 방화샷다로 방화구획된 전물 1. 바닥면적의 합계 1,000 평 이내 마다 구획된 것 2. 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 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된 것 3. 11층 이상의 모든 층에 있어서 는 바닥면적 200 평(단, 벽 및 반 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 이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500 평) 이내마다 구획된 것 4. 1내지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있 어서는 각 용도별로 구획된 것 나. 목조건물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획된 전물 1. 연면적 1,000 평 미만마다 방화 벽으로 구획된 것 2.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합용 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로 구획된 것	(2) 防火區劃 ① 延面積 1,000 평 이상의 建物 建物의 各部分이 다음各號의 定하 는 바에 따라 適合하게 防火區劃이 된 建物 1. 바닥面積이 合計 1,000 평이내 마다 區劃된 것 2. 3層이상의 모든 層과 地下層 에 있어서는 層마다 區劃된 것 3. 11層 이상의 모든 層에 있어 서는 바닥面積 200 평(但, 壁 및 반자의 室內에 面하는 部分의 마감이 不燃材料로 된 경우에 는 500 평) 이내마다 區劃된 것 4. 複合用途로 使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各 用途別로 區劃된 것
나. 건축법 제16조의 규 정에 맞는 방화벽을 설 치한 건물		
② 그 밖의 건물 1,2급 구조의 전물로서 내 화재 또는 불연재로서 2개 의 분실 이상으로 방화구획 이 된 전물	② 그 밖의 건물 전물 연면적에 대하여 전물의 각 부 분이 1/2 내지 1/3로 방화구획된 전 물	② 그 밖의 建物 建物의 各部分이 建物 延面積에 대하 여 1/2 내지 1/3로 防火區劃이 된 建 物(단,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전물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로 방화구획이 된 전물)

현행 요율서 규정	개정 전의 초안	改正
(주) 지정건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대상건물을 말한다.	(주) 1. 이 규정의 적용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의한다. 2. 복합용도라 함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할 건축물을 용도를 말한다.	(註) 1. 이規定의 適用은 建築法令에서 定한 技術基準에 依한다. 2. 複合用途라 함은 그用途로 使用되는 層 또는 바닥面積의 合計에 따라 建築法에서 定한 耐火構造로 하여야 할 建物에 해당하는用途의 것을 말한다.
<u>피난설비</u>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 내지 제110조와 소방법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한 피난에 필요한 계단, 기구 및 유도장치의 설치가 적법 하게 구비된 건물	<u>피난설비</u>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된 건물로서 다음 각호에 제기한 피난설비 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구비된 건물 1. 육상광장, 헤리포트 2. 유도동, 유도표지 (주) 이 규정의 적용은 건축법 시행령 및 소방법규에서 정한 기술 기준에 의한다.	(3) 避難設備 建築法令에서 定하는 數 이상의 直通階段이 避難階段 또는 特別避難階段의 構造로 된 建物로서 다음 각號에 記載한 避難設備 等이 設置基準에 適合하게 具備된 建物 1. 複道, 出口 2. 屋上廣場, 헤리포트 3. 誘導燈, 誘導標識 (註) 이規定의 適用은 建築法 施行令 및 消防法령에서 定한 技術基準에 依한다.

※ 개정된 규정은 당협회의 최종 개정 전의 안의 全文이 그대로 반영된 것임.

5. 建物火災의『人命救助用 로보트』

《日本防災システム協会》는 過去 1年間 調査研究를 進行해 온 中高層 빌딩 등의 火災時의 「人命救助用 로보트」에 대해서 檢索, 避難誘導, 常備型避難誘導, Capsule의 四種의 로보트와 有人操作用 救助 Vehicle을 連動시킴으로써 效率의 救助活動을 할 수 있다는 結論을 얻고 '83年度에는 《日本産業用 로보트工業會》와 함께 試驗製作 開發를 진행해 나아갈 計劃이라 한다. 防火情報 第19號에서 소개한 바 있는 「消防用 로보트」의 開發에 앞서 研究되어 온 이 計劃은 '82년 6월 29일 東京 神田의 學士會館에서 열린 特別 세미나에서 詳細한 研究結果의 發表가 있은데 이어 最近에는 그 概念設計를 完成, 이를 整理한 報告書가 나왔다.

이 「人命救助用 로보트」는 高層 빌딩, 地下街, 大型 터널, 病院 등의 火災를 研究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그 機能으로서는

① 火災初期에 있어서 現 防災 시스템의 결점을 补完하고 檢索, 避難誘導의 實效를 높이는 「固定設備의 补完」

② 消防隊員에 의한 救助活動을 支援하고 그 安全化와 效率化를 도모하여 消防隊員의 殉職을 防止하는 「消防隊員 救助活動의 补完」

③ 消防隊員에 의한 救助活動이 不可能한 破局的 火災狀況에서 自律的 機能을 갖고 迅速·高精度,